7면에서 계속 ➞

김 교수는 토론에서 대안을 찾았다. 과거에는 글쓰기를 학습의 최종 단계로 여겼지만, 이제는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토론하며 내용을 한 번 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각자 글을 읽어온 후 드는 생각을 학생이 써온 글로 받기보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현장성을 띠는 인클래스 토론을 진행하면, 학생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몇 년 간 레포트 과제를 받지 않았으나, 글을 쓰고 싶다는 국문과 학생들의 요청으로 지난 학기부터 다시 레포트를 받기 시작했다. 정 교수는 "학생의 이해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레포트를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에게 첨삭을 받듯 수업 시간에 레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 교수의 대응은 달랐으나, 단순한 과제만으로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김 교수는 수업·과제의 성격에 따라 AI 활용 가능 범위와 평가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학생들이 적절한 AI 활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AI시대에도 남겨야하는 인문학의 핵심 소양은

AI가 일상화된 지금, 교수들은 사고력과 상상력,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성찰의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영(행정학) 교수는 독서의 첫 번째 목적은 내용 숙지가 아닌 독서를 통한 경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는 내용 숙지를 돕지만, 이는 부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도움을 줄 뿐, 학생이 직접 고민하고 성찰하는 진짜 공부엔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교수 또한 "자신과 다른 관점의 생각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전통적으로도, 앞으로도 핵심소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역량은 학생들이 직접 읽고 쓰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읽고, 글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하 교수도 "과제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건 과제 제출이 아닌 수행 과정 중 직접 글을 읽고 성찰하는 과정"이라 말했다.

글쓰기 교수법 연구로 저명한 배재대 김화선(현대문학) 교수는 이 같은 역량을 기르기 위해 타인과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를 활용하더라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질문하고, 답변을 자기 생각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과 토론하며 생각을 구체화하고, 직접 경험한 상황을 글에 담도록 돕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의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이 쓴 초고에 학생 튜터가 조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쳐 쓴 원고에 담당 교수가 추가 피드백을 준다. 김 교수는 "글쓰기 실력은 여러 번 고쳐 쓰는 과정에서 자라기에 이러한 과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AI는 학생의 글을 교정, 첨삭해주는 과정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김 교수는 "AI는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사람은 글이 쓰인 상황과 맥락에 맞춰 구체적으로 조언할 수 있다"며 두 방식을 병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평가 역시 학생이 글을 완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피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완성된 글만으로는 학생의 생각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AI가 글쓰기의 일부를 대신할수록 무엇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쓴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완성된 글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쓴 글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활동까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당사자능력 없어" 노조 대상 가처분 각하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우리학교가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산하 경희학원지부·산학협력단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신청의 채권자인 '경희대학교'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자격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산학협력단과 노조 간 임금교섭이 결렬된 이후인 지난 9월 18일 이뤄졌다. 당시 학교는 9월 21일 서울캠에서 예정된 'Peace BAR Festival(PBF)'을 앞두고 있었으며, 같은 날 노조도 서울캠에서 노동교육과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학교는 노조의 집회·시위로 인한 교육·연구·행정업무 및 시설 이용 방해를 우려해 서울캠 청운관·본관·평화의 전당 등에서 특정 집회·시위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노조는 PBF와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21일 예정된 행사를 자진 연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노조 측은 '경희대학교'에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희대학교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설립·경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김진상 총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소송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법인 경희학원·대학·산학협력단 공동으로 가처분 추진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책임자 문책 및 경질 ▲정당한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 및 노조와의 갈등을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각하 결정이 또 다른 소송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만 바꾸어 동일한 목적의 가처분을 다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윤 인사처장은 학교 측 입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항고나 재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결론 난 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노조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희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동반자 관계에는 항상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